

2023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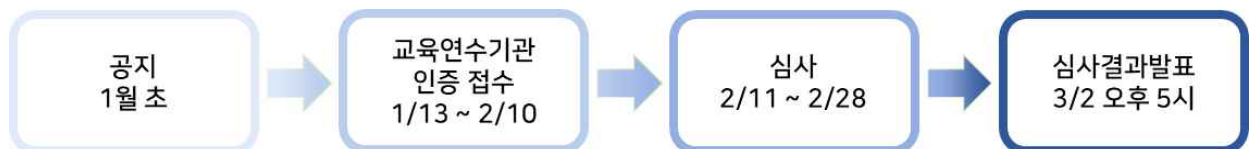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입니다.

2023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상담 기관에서는 아래의 공지를 참고하여 신규 신청 및 재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지원대상
2. 접수방법
3. 신청조건 및 첨부서류
4.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5. 유의사항
6. 문의

※ 심사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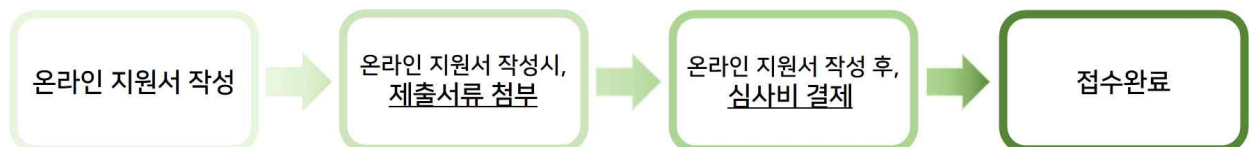
1. 지원대상

- 1) 신 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 2) 재인증: 2018년도에 인증받은 교육연수기관(※지원필수), 현재 정지된 교육연수기관, 대표자가 변경된 교육연수기관(일반기관만 해당/공공기관 제외)

2. 접수방법

- 1) 기간: 2023년 1월 13일(금) 10:00 ~ 2월 10일(금) 17:00
- 2) 심사비: 100,000원
 - * 기관회비(100,000원)와 심사비는 별도 비용입니다.
 - * 기관회비와 심사비 모두 접수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3) 절차



4) 신청서 접수 및 심사비 납부 방법:

- (1) 온라인 신청서로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2) 제출서류는 신청서 작성시 **파일첨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심사비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4)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 수정 및 첨부파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5) 제출서류 미비는 따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 ▶ 2023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신규]** 접수하러 가기(클릭)
- ▶ 2023년 상반기 교육연수기관 **[재인증]** 접수하러 가기(클릭)

3. 신청조건 및 제출서류

1) 개인(일반)기관 (신규 및 재인증)

(1) 신청조건	① 1급 전문상담사 :본 학회에서 발급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회원 유지 요건 공지 보기)	
	②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 수련생에게 슈퍼비전을 포함한 각종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상담사로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로 구분됩니다.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① 기관회원 가입	㉠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전 반드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기관회원 가입하기)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기관 대표자 조건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
	③ 기관 시설 조건	㉠ 대표자 명의의 또는 임대 계약한 기관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등)
	④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 대표자 포함 2인 ㉡ 한 수련감독자가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연수기관은 1곳이며, 이를 포함하여 3곳까지 교육연수기관에 수련감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첨부서류)	⑤ 기타	㉠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②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③ 대표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④ 대표자 외 수련감독자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⑤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한 상담 관련 자격증) ⑥ 정관(운영규정)** ⑦ 조직표** ⑧ 장단기 사업계획서** ⑨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및 기관 시설 사진 * 첨부서류 ③, ④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검색 으로 대표자와 수련감독자를 입력하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관(기관 운영 지침),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 양식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신규 및 재인증)

(1) 신청조건	① 1급 전문상담사 :본 학회에서 발급한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 매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회원 유지 요건 공지 보기)	
	②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 수련생에게 슈퍼비전을 포함한 각종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상담사로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 수련감독자'로 구분됩니다.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① 기관회원 가입	㉠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전 반드시 (사)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기관회원 가입하기) ㉡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기관 대표자 조건 (㉠, ㉡중 반드시 1개 포함)	㉠ 1급 전문상담사(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일반 수련감독자) 또는 ㉡ 대표자가 박사학위 취득하고 분과·지역학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기관 시설 조건	㉠ 사무실 외에 2개 이상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함 (예: 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집단상담실 등등)
	④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1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인 경우: 대표자 포함 2인 또는 ㉠-2 대표자가 1급 전문상담사가 아닌 경우: 수련감독자 2명 ㉡ 한 수련감독자가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 교육연수기관은 1곳이며, 이를 포함하여 3곳까지 교육연수기관에 수련감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첨부서류)	⑤ 기타	㉠ 사무직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증 중 택 1 ② 대표자의 박사학위 증명서 ③ 대표자가 관련 기관에 임용된 근거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1년 이상의 임용 잔여기간이 표시된 발령장 사본 ④ 분과학회장 또는 지역학회장의 추천서(첨부2. 분과지역학회장 추천서 참고) ⑤ 수련감독자 2인의 본 학회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⑥ 상담원의 자격증 사본(본 학회 포함한 상담 관련 자격증) ⑦ 정관(운영규정)*** ⑧ 조직표*** ⑨ 장단기 사업계획서*** ⑩ 상담 기관 시설 배치도(실제 길이를 CM로 표시), 기관 시설 사진 * 첨부서류 ⑤는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검색 으로 대표자와 수련감독자를 입력하고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공기관의 대표자(센터장)가 본 학회 수련감독자 아닌 경우, 대표자 직책란에 성함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기관 운영 지침), 조직표, 장단기 사업계획서 양식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교육연수기관 인증 결과

1) 결과발표

- (1) 일시: 2023년 3월 2일(목) 오후 5시
 (2) 확인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 - 분과/지역/연수기관 - 교육연수기관 - [인증신청 내역](#)에서 심사결과 확인

2) 인증서

- (1) 발급: 본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로그아웃 밑에 연수기관 인증서 클릭 -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또는 마이페이지 - 정보수정에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출력
 (2) 유효기간
 ① 2023년 3월 01일 ~ 2024년 2월 29일
 ② 인증서는 매년 3월 1일에 1년 단위로 발급됩니다.
 ③ 연회비 납부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연수기관 인증 후, 유의사항

1) 2023년 상반기 신규 인증 및 재인증의 인증기간 및 재인증 시기:

인증기간은 2023년 3월 1일 ~ 2028년 2월 29일이며, 이후에도 교육연수기관을 유지하려면 2028년 상반기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5년마다 재인증).

2) 연회비

- (1) 교육연수기관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 기관회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기간: 매년 2월 28일까지(미납 시 교육연수기관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3) 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연회비 결제하기](#) - 결제하기

3) 교육연수기관의 자격 정지 사유

- (1) 대표자의 수련감독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회원 유지 요건 미충족, 윤리위반 등
 (2) 재인증 실패: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기관 주소(소재지), 대표자,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위원회에 적발되거나 해당 기관의 수련생이 자격검정 심사 과정 중 불이익을 받은 경우
 (4) 기관 대표 변경, 강사 변동, 프로그램 변경, 기타 문제로 인해 교육연수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연회비 미납: 연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관회원이 정지된 경우

4) 교육연수기관 정보 변경

: 교육연수기관의 주소, 기관 명칭, 수련감독자, 대표자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 (1) 변경 내용 및 제출 서류

① 일반(개인)기관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주소변경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기관 명칭 변경	명칭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 자격증
대표자 변경	재인증해야 함

② 공공기관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주소변경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 각1부
기관 명칭 변경	명칭 변경 관련 공문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 자격증
대표자 변경	대표자 임용근거 서류, 박사학위증명서 각1부

(2) 방법 :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교육연수기관 정보 수정 요청

5)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 홍보하거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문의 02-875-5830(내선번호 2번) / 홈페이지-커뮤니티-Q&A 기관회원 관련 문의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